

## 일본의 재난방송 관련 법규와 NHK에 관한 연구

\* 이 연

선문대학교

\* leeyeon@sunmoon.ac.kr

## A Study on Japanese Disaster Relevant Regulations and NHK

\* Lee Yeon

sunmoon university

## 요약

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느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①「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②방송법 ③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④국민보호법 ⑤소방조직법 ⑥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sup>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1) 「電子政府の総合窓口 イーガブ「災害対策基本法」  
「内閣府/防災情報のページ「災害対策基本法」

「内閣府/国会提出法案「災害対策基本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災害対策法制見直しの全体像」

## 1. 재난방송에 관련 된 법규

### 1) 재해대책기본법

(1)재해대책기본법 제2조 제3항(지정행정기관), 제4항(지정 지방행정기관) 제5항(지정공공기관)의 규정에 의하면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기관(지정행정기관, 지정 지방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시 각각 직장 영역에 따라 책임을 완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 (2)재해대책기본법 제2조 제5항

지정공공기관 독립행정법인,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그 외 공적기관 및 전기, 가스, 수송, 통신 기타 공익적 사업을 하는 영업법인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것. \*지정 행정기관: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등 정부 각 정부부처. \*지정 지방행정기관: 오키나와 종합사무소, 관구경찰국, 종합통신국, 지방 후생국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부처. \*지정공공기관: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NHK), 도쿄 전력, 일본전신전화국 (NTT) 등

(3)제6조(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책무). 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은, 기본 이념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방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입각해 이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법률 규정에 의

한 지사는 법령 규정에 따라서, 기상청 그 외의 국가 기관으로부터 재해에 관한 예보 혹은 경보의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스스로 재해에 관한 경보를 했을 경우에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재해의 사태 및 이것에 대해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관계지정 지방행정기관의 장, 지정 지방공공기관, 시정촌(시읍면)장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해, 필요한 통지 또는 요청을 해야 한다.

③제56조(시정촌장의 정보전달 및 경고) 시정촌(시읍면)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에 관한 예보 혹은 경보의 통지를 받았을 때, 스스로 재해에 관한 예보 혹은 경보를 알았을 경우, 법령규정에 따라 스스로 재해에 관한 경보를 했을 때, 또는 전조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역 방재계획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당 예보 혹은 경보 또는 통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관계기관 및 주민, 그 외 관계가 있는 공사의 단체에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촌(시읍면)장은 주민 그 외

해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자체) 및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의 방재계획 작성 및 실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업무에 있어서도 해당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해서 협력할 책무가 있다.

2. 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은, 그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에 비추어 각 각의 업무를 통해서 방재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스, 철도, 수도, 일본 적십자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NHK의 지정공공기관 지정은 우리나라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해당

①재해대책기본법 제54조(발견자의 전달의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정상인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시정촌(시읍면)장, 또는 경찰관, 혹은 해상 보안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몇 사람이나 전 항의 통보가 가장 신속히 도달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3.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관 또는 해상 보안관은, 그 취지를 신속하게 시정촌(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정촌(시읍면)장은, 지역 방재계획이 정해져 있는 대로, 그 취지를 기상청 그 외의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②제55조(도도부현 지사의 통지 등) 도도부

관계가 있는 공사의 단체에 대해 예상되는 재해의 사태 및 이에 따라서 취해야 할 피난을 위한 퇴거의 준비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통지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2. 시정촌(시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통지 또는 경고를 함에 있어서, 요 배려자가 제6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피난을 위한 퇴거의 권고 또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 원활히 피난을 위한 퇴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야 한다.

④제57조(경보의 전달 등을 위해 통신설비의 우선 이용 등)

전항 2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 요청, 전달 또는 경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정촌장은, 타 법률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령(政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설

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또는 유선전기통신법 제3조제4항 제4호(경찰사무, 소방사무, 항공보안사무, 해상보안사무, 기상업무, 철도사업, 궤도사업, 전기사업, 광업 등)에서 들고 있는 자가 설치한 유선전기통신설비, 또는 무선설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송법 제2조 제23호에 규정한 기간방송사업자에 방송을 요청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제공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방송법

제108조(재해방송) 기간방송사업자는 국내 기간방송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폭풍, 호우, 홍수, 지진, 대규모 화재 그 외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고, 또는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재난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개요>

**본 조는 기간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방송 등을 행함에 있어서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경감하는 역할을 하는 방송을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1) 일본방송협회(NHK) 방재업무계획

NHK는 “재해대책기본법”에서 보도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방재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책무를 지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지정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총리대신에게 보고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NHK는 재해 시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본방송협회방재업무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일본방송협회방재업무계획(요지)

##### 제1장 총 칙

##### 제1절 계획의 의의

이 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 및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남해 트로프(trough)지진, 일본해구 · 쿠릴해구 주변 해구 형 지진에 따른 지진방재대책의 추진에 관한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재 기본계획’ · ‘지진방재기본계획’ · ‘지진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작성했

다. 재해 시에 방송의 송출 및 수신을 확보해서, 재해대책 조치의 원활, 적절한 실시를 도모, 공공방송으로서의 사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2절 방재체계의 확립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배치체제를 취하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만전의 조치를 강구한다.

#### 제3절 방재시설 · 설비 등의 정비

재해 시에는 방송 송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재 시설 · 설비의 정비확충을 꾀 한다. 재해 응급 · 복구대책에 필요한 자재의 비축, 정비를 도모한다.

#### 제2장 재해예방계획

##### 제1절 직원에 대한 방재교육 실시

방재사상의 보급, 재해에 관한 지식의 주지철저에 노력함과 동시에 재해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습회 등의 실시 및 지도를 한다.

##### 제2절 방송에 의한 방재사상의 보급

평상시부터 재해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시청자들의 재해 예방, 응급조치, 피난 등에 관한 인식의 향상에 노력한다. 관계 각 기관과 연대를 긴밀하게 하여 재해에 관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제3절 방재훈련

##### 제1 내부자 훈련

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동원이나 정보연락, 방송 송출, 시청자 대응, 방송 시설 방재 등의 대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한다.

##### 제2 관계기관과의 공동훈련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주최하는 방재훈련, 방재연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 제3장 재해응급대책계획

##### 제1절 방송대책

##### 제1 재해의 프로그램 편성 방침

재해 시에 방송프로그램은 재해의 종별 · 상황에 따라 긴급경보방송, 재해관련정보, 경보, 뉴스 및 공지사항, 해설 · 캠페인 프로그램 등 유효적절한 관련 프로그램을 기동적으로 편성한다. 방송에 있어서는 외국인, 시청각 장애인 등에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 제2 재해시의 뉴스 취재

재해 시에 주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해 상황이나 전망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정보 수집해 신속·정확한 방송을 한다.

제3 요청에 따른 예보, 경보, 경고, 등의 방송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해에 관한 예보, 경보, 경고 그 외 긴급을 요하는 공지사항의 방송 관련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적확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지역에 주지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한다.

제2절 방송시설대책

재해 시에는 방송시설에 대한 장애배제에 만전을 기한다. 방송시설이나 중계회선, 연주소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시의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조치를 강구해서 방송 송출 확보에 노력한다.

제3절 수신대책

재해 시에 있어서 수신기의 유지·확보를 위해 수신시설의 복구와 피난처 등에 수신기 대여·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4절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재해 시에는 국가의 비상재해대책본부나 관계 성청 등의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제4장 재해복구계획

재해 복구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시설과 설비의 조기 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다시 같은 종류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피해를 입은 시설이나 설비 등에 관해서는 신속·적확하게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작성한다. 복구공사는 인력, 자재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신속하게 진행한다.

제5장 지진방재강화계획과 지진방재대책추진계획의 작성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는 지진방재강화계획을 작성한다. 남해 트로트지진에 관한 지진방재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일본해구·쿠릴-감차카해구 주변 해구형지진에 관한 지진방재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진방재대책추진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진방재대책추진계획을 작성한다.

### 3)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 (1)경계선언시의 대응 등, 지진방재대응대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추진
- (2)경계선언 발령 → 각종 계획에 의한 지진방재응급대책 실시
- (3)국가에서 관측·측량 강화
- (4)강화계획에 입각해 긴급히 정비해야 할 시설 등의 정비에 보조

### 4) 기상법

- (1)기상업무법 제11조, 기상청은 관측성과 등의 공표가 공중의 편리를 증진한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보도기관의 협력을 요청해서 즉시 공표 하고, 공중에게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2)기상업무법 13조3항, 기상청은 기상, 지상, 쓰나미 등의 예보, 경보를 할 때는 보도기관의 협력을 요청해서 공중에게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3)기상업무법 제15조 1항, 6항, 기상청이 기상 등을 정보할 때에는 NHK에 통지하고, NHK는 즉시 그 사항을 방송해야 한다.

### 5) 국민보호법

- (1)제8조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은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6) 그 외 관련 법규

- ①자연재해대책기본법 ②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③도난가이(東南海)·난가이(南海)지진, 니혼가이코(日本海溝)·치시마가이코(千島海溝)주변 해구형 지진에 관련된 지진방재대책법 ④소방조직법 ⑤수해방지법 등이 있다.